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28
----------	-------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자 : 강득구 · 김문수 · 민병덕
박해철 · 서삼석 · 서영교
송재봉 · 이학영 · 장종태
조계원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병역 기피는 헌법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의 죄
2.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의 죄
3.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의 죄
4.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의 죄
5.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의 죄
6.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의 죄
7.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의 죄
8.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의 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
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8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다</u> <u>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u> <u>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u> <u>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u> <u>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u> <u>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u> <u>지 아니한다.</u> <u>1.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u> <u>의 죄</u> <u>2.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u> <u>등)의 죄</u> <u>3.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의</u> <u>죄</u> <u>4.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u> <u>위)의 죄</u> <u>5.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u> <u>대리복무)의 죄</u> <u>6.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u> <u>급)의 죄</u> <u>7.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u> <u>명서 등의 발급)의 죄</u> <u>8.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u> <u>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의</u>

죄
